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2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 문진석 · 서영석 · 이상헌

송갑석 • 이정문 • 이형석

이동주 • 윤재갑 • 민형배

조오섭 • 이규민 • 변재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%(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%)를 세액공제하고 있음.

그러나,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%에서 12%로 상향하고,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2조의3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12"로, "100분의 12"를 "100분의 15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75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2조의3(성실사업자에 대한	제122조의3(성실사업자에 대한
의료비 등 공제) ①・② (생	의료비 등 공제) ①·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	3
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	
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	
업자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70	
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	
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	
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	
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	
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	
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	
의 <u>100분의 10</u> (해당 과세연도	<u>100분의 12</u>
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	
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	
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「소득	
세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	
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	
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	
경우에는 <u>100분의 12</u>)에 해당	<u>100분의 15</u>
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월	
세세액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	

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	
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월세액이	
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	<u> 1천만원</u>
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	
한다.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